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가단13595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안

담당변호사 김훈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 11분의 2에 관하여 2017. 12. 30.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 11분의 2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8. 접수 제15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577955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9. ‘C은 원고에게 4,340,909원 및 그 중 1,143,566원에 대하여는 200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1,075,558원에 대하여는 200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C의 부(父)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7. 11. 사망하였고, 당시 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E와 그 자녀들인 F, C, G, 피고가 있었다. 위 상속인들은 2017. 12. 30. 망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전남 무안군 H 임야 333㎡는 피고의 소유로, 기업은행 정기예금 원금 1억 6,500만 원에서 장례비 3,100만 원 및 병원비 5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 중 1,500만 원은 F의 소유로, 1억 1,400만 원은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8. 접수 제1560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었고, 원고 외에도 다수의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은행, J은행, K은행, 중소기업은행, 우정사업본부, L단체, M기관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채무자인 C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C의 법정상속분인 지분 11분의 2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망인의 사망 전 충분한 사전 증여를 받았고, 피고가 망인과 E를 주로 부양함에 따른 특별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이 사건 아파트 등 상속재산을 단독 명의로 이전하기로 합의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C의 구체적 상속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3, 4, 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자신들의 받은 증여재산의 가액과 피고의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E는 1995. 10. 30. C의 전 배우자였던 N와 장모였던 O에게 현금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하고, 2000. 10. 10. C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망인이 사전 증여의 증빙으로 보관한 자료라며 그 무통장 입금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E가 망인과 별도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각 송금은 망인의 C에 대한 증여로써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한편, 망인은 1996년 9~10월경 F에게 전세자금 3,000만 원을 지원하고, 2014. 6. 5. G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4,8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자금의 지원 또한 F과 G에 대한 사전 증여로써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다) 망인은 2008. 6. 10.경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E는 2007년경 중대뇌동맥 혈전증으로 인한 뇌경색증 진단을 받아 그 이후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받아왔는데, 피고 부부는 2007년 이후 망인과 E의 병원비 대부분을 부담하여 왔다. 또한 E는 망인이 사망하고 이 사건 분할협약에 따라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고, C은 2001년 이후 여러 차례 무단전출이나 거주불명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망인의 사망 후인 2017. 12. 21.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 등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를 제외한 다른 자녀들이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사전 증여를 받은 점, F, G이 C의 채무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분할협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부부가 망인과 E의 건강이 악화된 이후 병원비를 대부분 부담하는 등으로 망인 부부를 부양하여 왔던 반면, C은 망인의 생전에 부양의무를 이행한 바 없는 점, E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고 등 그의 자녀들이 E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C, G에 비해 증여받은 금액이 적은 F에게 망인의 상속재산 중 현금 1,500만 원을 분할하고, 그 나머지는 망인 부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여 온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분할협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그리고 망인이 사망한 2017년 당시 국토교통부 자료에 나타나는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전용면적(59.4㎡)의 실거래가격은 2억 8,000만 원 내지 3억 1,000만 원이었으므로 그 가액 중 C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50,909,090원(= 280,000,000원 × 2/11, 원 미만 버리고, 이하 같다) 내지 56,363,636원(= 310,000,000원 × 2/11)이고, C은 이 사건 분할협약으로써 위 가액 상당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었다 할 것인데, C에 대한 사전 증여 시점을 고려할 때 상속이 개시된 2017년을 기준으로 한 증여가액은 71,078,527원¹⁾ 이므로, C은 적어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가액 이상의 특별수익이 있었다.

바) 위와 같이 C을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에 대한 고려, 피고의 망인 부부에 대한 부양

정도와 E의 여생을 위한 부양의 목적, C의 부양의무 이행 여부와 실질적으로 포기하게 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경우에도 사적자치의 원칙상 상속인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는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라 결과적으로 C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가 C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윤한

별지목록

1. 1 등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59.4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 6740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7219 분의 25.4572

이상 소유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끝.

1) = (35,000,000원 × 2017년 GDP 디플레이터 104.253 / 1995년 GDP 디플레이터 63.893) +
(10,000,000원 × 2017년 GDP 디플레이터 104.253 / 2000년 GDP 디플레이터 74.628)